남북협력기금 보험제도안내



교 역

경제협력사업

통 일 부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정부수탁기관



Contents





남북협력기금 보험제도 안내

Ⅰ. 보험제도 개요 ····· 2
Ⅱ. 경제협력사업 보험 ····· 3
Ⅲ. 교역 보험 ····· 6
Ⅳ. 절차 및 신청서류 ····· 10

Ⅰ. 보험제도 개요

■ 교역 · 경협사업 보험이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非常危險)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보험의 기능

- **대북거래의 안전성 제고**

  남한주민이 정치적 위험 등으로 인한 손실 부담없이 안심하고 대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험경감상품

- **정책보험 역할**

  통상의 보험으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대북거래 위험을 경감함으로써 국내거래/제3국 거래시와 유사한 환경 조성

- **조건부 지급**

  남한주민에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고 사전 약정한 담보 위험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

■ 보험의 종목

종 목		대 상
경제협력사업보험	지분등 투자보험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지연
	대부등 투자보험	대부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지연
	권리등 투자보험	취득원금의 회수불능/지연
교역보험	선적후 반출보험	반출한 물품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 회수불능/지연
	선적전 반출보험	반출계약에 따라 구입/제작한 물품 등의 반출불능/지연
	반입보험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한 대응물자의 반입불능/지연
	위탁가공설비 보험	반출한 위탁가공설비 대금의 회수불능/지연

Ⅱ. 경제협력사업 보험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 제한·당국간 합의파기 등으로 인하여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투자

통일부로부터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아래의 투자 또는 권리 취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 목	대 상
지분등 투자보험	지분 또는 주식의 취득
대부등 투자보험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대부채권 또는 사채의 취득
권리등 투자보험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 권리의 취득 북한지사의 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 권리의 취득

■ 담보하는 위험

보험계약자가 아래와 같은 비상위험 발생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기금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수용위험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파산 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송금위험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개월 이상의 송금불능
약정불이행위험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 당국간 합의파기·약정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불가항력위험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보험가입 조건

- **신청자격**
  - 정부로부터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

◀ 신청제한대상 ▶

-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제재받은 자
- ◆ 기금 지원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자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발생기업
- ◆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원인을 제공한 자
- ◆ 약정 해지후 1년 미경과 또는 2회 이상 보험계약을 해지한 자
-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상위험이 현존한다고 판단한 경우
- ◆ 피투자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보험계약 체결한도 : 기업당 50억원**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증액 가능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
  - 보험금액 : 보험가액중 기금이 손실발생을 담보하는 금액 (보험금의 최고한도액)
  - 보험가액 : 보험대상 전체금액 (투자예정액 또는 실제 투자금액)
  - 부 보 율*: 경제특구지역 90% (기타 지역은 70%)

  * 보험사고 발생시 손실액 대비 기금이 보조하는 비율

※ 보험금 지급액 : 순손실액 × 부보율

단, 보험관계성립금액(보험계약금액 중 실제 보험계약 효력이 발생한 금액) 범위내로 지급

- **보험기간 : 10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결정**
  - 보험계약기간 동안 해지사실이 없는 등 요건이 충족되면 5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보험료

- **보험료율 : 연 0.5~0.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

- **납부금액 : 보험관계성립금액* × 보험료율**

  * 보험관계성립금액 : 보험금액 중 실제 투자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

- **납부방법 : 분기 단위로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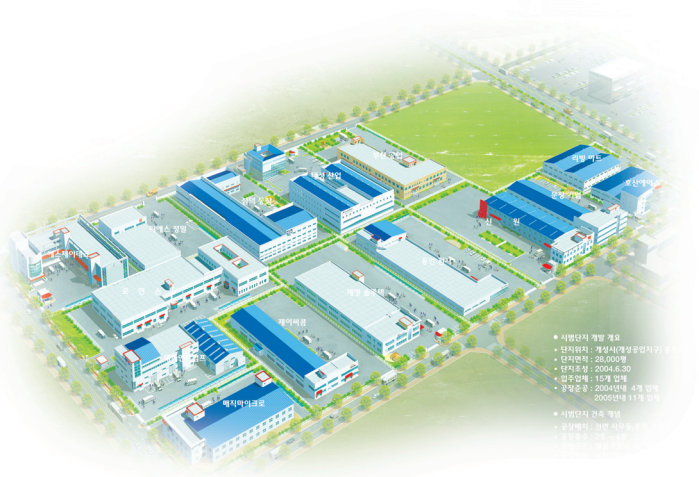
- **납부시기 : 매분기가 시작되는 달(1•4•7•10월) 15일**
  - 단, 보험관계 성립후 최초납부는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보험관계 성립 및 효력 발생

- **보험계약체결 : 지원방침 결정내용에 따라 보험증서 및 약관 교부**

- **보험관계 성립**
  - 투자증빙서류를 근거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할 경우: 투자 송금일로부터 6개월(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투자증빙서류 제출
  - 결산서류를 근거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 결산서류 제출

-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 보험관계 성립 통지후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효력 발생



Ⅲ. 교역보험

교역보험은 북측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을 하는 국내 기업이 당사자간에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거래

결제기간이 2년(위탁가공설비는 5년) 이내이고 남북한 주민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아래의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 목	대 상
선적후 반출 보험	① 남한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반출계약 ② 남한주민이 제3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의 반출계약 ③ 남한주민이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의 반출계약
선적전 반출 보험	① 남한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반출계약 ② 남한주민이 제3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의 반출계약 ③ 남한주민이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의 반출계약
반입 보험	① 북한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의 반입계약 ② 북한현지법인/남한주민의 위탁으로 북한에서 생산·가공한 물품의 반입계약 ③ 위의 물품을 남한주민의 제3국지사 등으로 수출하는 계약
위탁가공 설비 보험	북한에서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설비를 반출하는 계약

■ 담보하는 위험

보험계약자가 아래의 위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 기금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 목	담보대상 위험
선적후 반출보험	① ~ ⑦
선적전 반출보험	① ~ ⑧
반입보험	① ~ ⑧
위탁가공설비 보험	⑨ ~ ⑩ (⑪는 특약사항)

①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②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③ 북한에서 실시되는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④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반출 불능
⑤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⑥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으로 외화 송금 지연
⑦ 기타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⑧ 남한 법령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 · 금지
⑨ 수용위험 : 북한당국 등에 의한 반출설비의 몰수 · 박탈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⑩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반출설비의 사용불능 · 파손
⑪ 계약불이행위험 : 북한의 계약당사자가 당국 등인 경우로서, 계약서상의 설비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입게 되는 설비의 사용불능

■ 보험가입 조건

- **신청자격**
  - 남북간 거래실적이 있는 자
  -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

◀ 신청제한대상 ▶

-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제재받은 자
- ◆ 기금 지원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자
-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 ◆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발생기업
- ◆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원인을 제공한 자
-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상위험이 현존한다고 판단한 경우

- **보험계약한도 : 기업당 10억원**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증액 가능
  - 부보율*: 70%

* 보험사고 발생시 손실액 대비 기금이 보조하는 비율.

※ 보험금 지급액 : 순손실액 × 부보율

단, 보험관계성립금액(보험계약금액 중 실제 보험계약 효력이 발생한 금액) 범위 내로 지급

보험계약체결 시기

구 분	반 출		반 입	위탁가공설비
	선적후	선적전		
보험계약 신청시기	계약후~반출전	계약후~제작전	계약후 ~ 대금지급전	계약후~반출전
보험 가액	선적금액	반출계약금액	입금대금	선적금액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			
보험관계 성 립	목적물 이행시기별로 보험계약 부합여부 심사를 거쳐 보험관계 확정			
보험책임 기 간	반출일~결제일	보험계약체결일 ~ 반출일	대금입금일 ~ 물품반입일	반출일부터 5년 이내
보험계약 효력발생	보험료 납부후			

- **보험계약체결방법 : 건별 약정**
  - 위탁가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2년 이상의 교역기간과 연평균 20만불 이상의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회전한도 약정*도 가능
    * 회전한도 약정 : 동일 계약자간의 반복적 거래를 대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동 범위내에서 보험 관계 성립

■ 보험료

- **납부금액 : 보험관계성립금액 × 보험료율**
- **납부시기 : 보험관계성립 통지일로부터 2영업일내**
- **보험료율 : 기본요율 ± 할인율(할증률)**



◀ 기 본 요 율 ▶

종 목	기 본 요 율
선적후 반출보험	보험기간 1개월 이하 0.5% (1개월단위 0.1% 가산)
선적전 반출보험	보험기간 3개월 이하 0.3% (1개월단위 0.01% 가산)
반입 보험	보험기간 1개월 이하 0.5% (1개월단위 0.1% 가산)
위탁가공설비 보험	연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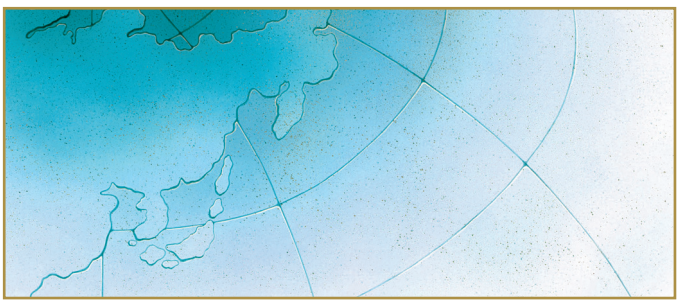
◀ 할 인 율 ▶

구 분		적 용 률
교역실적 할인	최근 연속 5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50%
	최근 연속 3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30%
	최근 5년이내 2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20%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		25%

* 할인율 : 기본요율 × 적용률
* 중소기업특별할인율은 여타 할인율에 추가하여 적용

◀ 할 증 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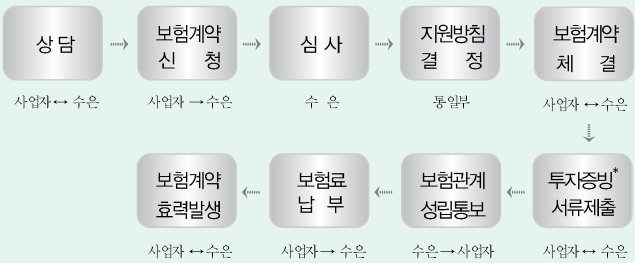
북측상대방 또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결제경험 등이 특별히 나쁜 경우 최고 200%까지 할증



Ⅳ. 절차 및 신청서류

■ 보험계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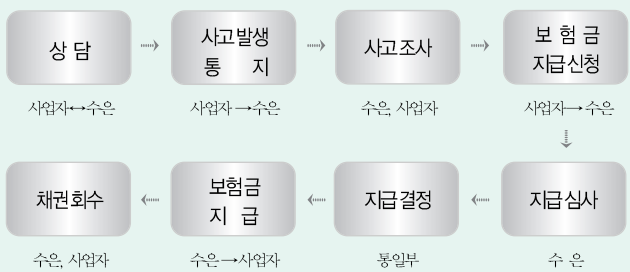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 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 경협보험 : 보험계약 체결후 투자송금일로부터 6개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역보험 : 반출 또는 송금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보험금 지급 절차

손실이 발생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금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신청서류

시 점	제출서류
보험계약 신청	▶ 보험계약 신청서 • 통일부의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서 사본 • 사업계획서 (회사의 개요, 향후 투자일정 등 포함) • 사업관련 계약서 사본 (토지분양계약서, 현지법인과의 투자계약서) • 신청인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개성 현지법인의 재무제표 • 대북투자신고수리서 • 기업창설승인서 또는 기업등록증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보험관계 성립을 위한 증빙서류	▶ 항목별 투자증빙서류 (경협보험) • 토지 : 토지매매계약서(토지공사), 입금증 • 건물 : 계약서(건물공사계약, 설계계약, 감리용역계약 등), 세금계산서, 입금증 • 기계설비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반출면장 • 집기 · 비품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반출면장 • 운전자금 : 입금증, 현지법인 명의의 출자 또는 차입 증명서 • 결산서류 제출로 보험관계성립시 : 감사보고서(남한 회계사), 회계검증보고서(개성공단 관리위원회) ▶ 반출통지서 (선적후 반출보험) ▶ 대금지급통지서 (반입보험)
사후관리	▶ 매회계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 결산서류 제출 (동 서류가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기준이 됨) • 기타 투자상대방, 지역변경, 사업내용 변경, 원금 및 이자상환조건 변경 등의 경우 통지해야 함 • 전체 투자금액중 보험가액이 성립되지 않은 투자금액은 동 금액비율만큼 감액
사고발생	▶ 사고발생통지서 ▶ 손실발생통지서
보험금 지급신청	▶ 보험금 지급신청서 • 보험금 신청경위 • 손실발생 증빙서류 • 보험증서 등

MEMO

MEMO